



비계 철거 중 비계파이프 전도



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비계해체과정 중 지상 1단 비계 띠장에 비스듬히 세워놓았던 강관 비계파이프 (Ø48.6mm, 길이 6m, 15.8kg)가 비계 해체 작업 중의 요동에 의해 넘어지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변에 자재정리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● 자재적치방법 불량

－ 전도되기 쉬운 긴자재를 해체작업으로 흔들리는 비계 띠장에 기대 세움으로서 비계파이프 전도

● 위험 지역 출입

－ 비계 해체작업 등 자재의 낙하, 비래 등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지역에 방호 대책 없이 출입하여 작업 수행

TIP

안전작업

1 자재의 안전한 적치 및 안전모 착용

－ 물체가 낙하, 충격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자재 적치 시는 근로자 통로를 확보하고 전도, 붕괴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정리 정돈 철저

2 위험지역 출입금지

－ 비계해체작업구역은 해당 작업 종사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



자재 적치 및 통로 확보



위험지역 출입금지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(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




비계 철거 중 비계다이프 전도

비계를 해체하는 위험지역내 동시작업을 금지하세요!

